-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739호

2022. 03. 2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2. 3. 14. 박종호·정택진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4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2022. 3. 2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정택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전통시장의 구역은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함.(안 제2조)

○ 시장등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정부,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구청장이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하되 소유권 분리 및 설치 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.(안 제5조)

○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인·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
○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0조)

○ 상인회 등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,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르도록 함.(안 제11조 및 제12조)

○ 구청장은 상인회가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.(안 제13조)

○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른 절차를 정함.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 검토 내용

○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,

○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시설물의 소유권과 이용료, 인.허가의 일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8조는 공유재산의 사용.수익허가,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9조는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0조는 임시시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상인회 등록 변경 및 취소,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3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4조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철회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안은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기술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하게 개정한 안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고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